2014년 8월 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8월 5일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생산혁신정책과 • 과장 : 조종래 (042-481-4431) • 사무관 : 오지영 (042-481-4449)

중기청, 「KOSBIR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」 발표

– 정부 R&D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–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**「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(KOSBIR) 제도」**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.

○ **KOSBIR*** **제도**는 대규모 R&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**소관 R&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**토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R&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.

*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

○ '98년 미국의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했으며, 그간 권고제로 운영되어 왔으나, 지난 '13.8월 **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」 개정**을 통해 **의무제로 전환**되어 제도가 강화되었다.

추진배경

□ **운영 현황**

○ **(시행기관)** KOSBIR 제도는 **소관 R&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19개 정부·공공기관***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.

* (정부) 미래부, 산업부, 방사청 등 13개 / (공공기관) 한전, 가스공사 등 6개

○ **(절차)** 매년 말 중기청장이 각 시행기관에 **의무비율을 제시**하고, 각 시행기관은 매년 초 **전년도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다음 년도 지원계획을 통보,** 중기청이 취합하여 **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**한다.

○ **(실적)** '98년 제도 도입 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3,442억원으로 시작해 '13년에는 1조 7,282억원으로 **연평균 10% 이상 증가세**를 보여왔다.

* KOSBIR 실적(억원, %) : ('98)3,442(8.4)→('03)5,823(11.6)→('08)10,464(9.6)→('13)17,282(11.8)

□ 검토배경

○ KOSBIR 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('13.8월)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**단편적으로 운영**됨에 따라 **사업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**에 따라,

○ **참여기관들의 관심을 제고**하고 **KOSBIR 대상사업 간 연계**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, 시장진출 등 **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**했다.

주요내용

□ KOSBIR 제도의 내실화

○ 시행기관 선정기준*을 명시하지 않고 **시행령에 기관명을 나열**해 운영함으로써 **예산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**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을 **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및 시행령에 법제화**한다.

* 소관 R&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

○ 또한, **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% 이상**이거나 **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**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시키고, **실적점검을 강화**하여 실효성을 높인다.

□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

○ 각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크고,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**중기청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**한다. 연계지원 내용 다음과 같다.

- **(자금)** 중진공이 운영하는 **개발기술사업화자금** 연계지원 및 기보, 시중은행 등과 협약을 통해 **사업화 자금에 대해 우대 지원 프로그램** 마련

- **(판로)** 중기청의 **'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'** 및 **수출사업에 연계**하여 기술개발 이후 판로개척을 지원

- **(추가 R&D)** 개발·응용단계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**중기청의 R&D 사업을 연계**하여 추가 R&D 자금을 지원

○ 이에 더해, 매년 초 각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**국무회의에 보고**함으로써,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.

□ **관리·운영체계 개편**

○ 수요자인 **중소기업의 접근성**을 높이기 위해 **KOSBIR 전용 온라인 사이트**를 개설하여 대상사업 목록, 사업 내용 등 **정보제공을 확대**하고,

- 각 기관별 **KOSBIR 사업을 통합하여 공고**하고, 매년 2회(2, 6월) **통합설명회**를 개최하는 등 **통합관리**를 실시하여 "KOSBIR 제도"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.

○ 또한, 매년 우수사례를 선발하고, 이 중 **최우수 사례**에 대해서는 **차년도 기술혁신대전에서 포상 수여 및 부스를 지원**한다.

추진계획

□ 중소기업청은 동 방안의 이행을 위해 **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」** 및 **동법 시행령을 개정**하고,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**「KOSBIR 제도 시행지침」**을 신속히 제정할 예정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오지영 사무관(☎042-481-44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첨부]

※ 동 자료는 2014년 8월 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(KOSBIR)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

2014. 07.

중소기업청

목 차

Ⅰ. 검토배경 ---- 1

Ⅱ. 그간의 성과 및 한계 ---- 4

Ⅲ. KOSBIR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---- 7

□1 KOSBIR 제도의 내실화 ---- 8

가. 시행기관 및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보완 ---- 8

나. 의무비율 산정·점검체계 개선 ---- 9

□2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---- 11

가. 부처 간 연계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 ---- 11

나. 보고체계 위상 강화 및 소통의 場 마련 ---- 14

□3 관리·운영체계 개편 ---- 15

가.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 ---- 15

나. 제도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---- 16

Ⅳ. 추진일정 ---- 17

Ⅰ. 검토 배경

□ 그간 정부는 **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**하기 위해 **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(KOSBIR)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**

○ 미국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**'98년 도입**되었으며, **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」 제13조에 근거를 마련**

○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R&D 지원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**KOSBIR 제도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***('14.1.1부터 시행)

* 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」 제13조 개정('13.8)

□ KOSBIR 제도 시행으로 **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R&D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**

* KOSBIR 지원 금액(억원) : ('98) 3,442 → ('13) 17,282 (5배 이상 증가)

○ 이로 인해, **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이** 구축되고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**중소기업 R&D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**

□ 제도 시행의 성과에도 불구하고, **운영 및 제도상의 한계** 등으로 인해 **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로의 착근에 애로**

○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선정기준, 의무비율 산정, 사업 간 연계, 중소기업의 제도에 대한 인식·활용 부족 등 **제도상 미흡한 점 존재**

○ 또한, **관리기관의 역량을 뒷받침할 기제가 부족**하고, 이로 인해 **부처별 협력체계 구축에도 한계**

➔ **KOSBIR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**

<참고1>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현황

□ 제도 개요

○ **(목적)** 대규모 R&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&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

* KOSBIR : **K**orea **S**mall **B**usiness **I**nnovation **R**esearch Program

- 미국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'98년 도입되었으며,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3조에 법적근거를 마련

○ **(시행기관)** 소관 R&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, 공공기관(19개)

* (정부) 미래부, 산업부, 방사청 등 13개, (공공기관) 한전, 도로공사 등 6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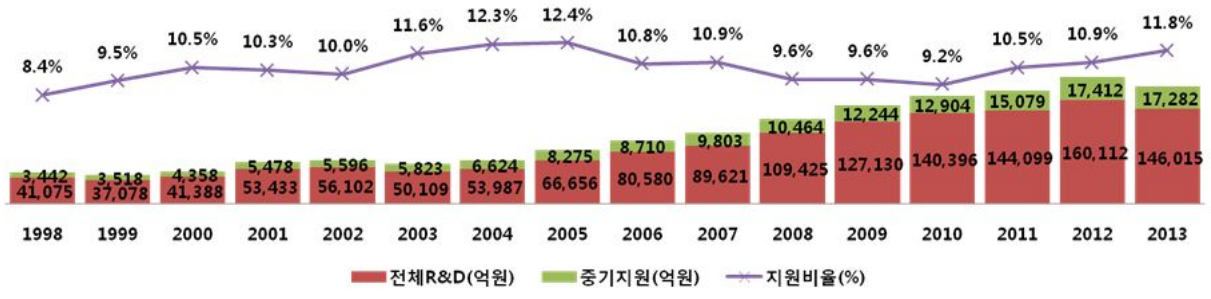
○ **(운영방식)** 시행기관별로 직전 3개년도 지원 실적 및 R&D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원 비율을 결정·제시

- 매년 초 중소기업청장이 각 시행기관별로 전년도 지원 실적 및 다음 년도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

□ 운영 실적

○ **(지원규모)** 중소기업 지원 예산 및 지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

< KOSBIR 시행기관 지원 실적('98~'13) >



○ **(기관별 실적)** '13년 KOSBIR 지원 금액 기준으로, 산업부, 미래부, 방사청, 국토부 순으로 중소기업에 R&D를 지원

* 기관 비중(%) : 산업부(67.8), 미래부(9.3), 방사청(7.4), 국토부(5.3), 기타부처(9.5), 공공기관(0.6)

<참고2> KOSBIR 제도 실태조사 결과

□ **실태조사 개요**

○ **(목적)** 최근 KOSBIR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의 성과 및 한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

○ **(방법)** 19개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후 방문하여 대면조사 실시('14.4.21~28, 산업연구원 및 중기청)

□ **실태조사 결과**

○ **(제도 인식)** 모든 시행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R&D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, KOSBIR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

- KOSBIR 제도를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R&D 지원체계가 아닌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집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

○ **(지원 방식)** 방사청, 문화재청 및 공공기관은 대부분 계약 방식으로 中企를 지원하며, 나머지 정부기관은 출연·보조로 지원

○ **(대상사업 관리)** 각 기관의 사업 담당자 및 참여 중소기업들은 해당 사업이 KOSBIR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,

- KOSBIR 대상사업에 대해 공고, 정보제공, 평가 등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

○ **(의무비율)** 의무비율 산정 시 시행기관 R&D 사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명확한 의무비율 산정기준이 없다는 의견

- 의무비율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대상사업 증가는 시행기관 입장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제도 내실화에도 부정적

Ⅱ. 그간의 성과 및 한계

1 제도시행 이후의 성과

□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○ **(KOSBIR 지원규모)** 정부·공공기관이 R&D 예산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KOSBIR 규모는 연평균 11.2%씩 증가

* KOSBIR 실적(억원) : ('98) 3,442억원 → ('13) 17,282억원

○ **(의무비율제)**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('14~)

□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인적·물적 기반 확대

○ **(R&D투자)** R&D 지원의 지속 확대로 R&D 수행 중소기업 수 및 중소기업의 자체 R&D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

* R&D 수행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(%) : ('01) 11,672개(12.4%) → ('12) 33,991개(31%)
* 중소·벤처기업 R&D 투자규모(억원) : ('01) 35,366 → ('11) 98,371

○ **(연구소와 인력)** 中企 부설연구소와 소속 연구원 수는 증가세 시현

*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수 : ('01) 8,217개 → ('12) 24,243개(2.95배↑)
*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수 : ('01) 68,896 → ('12) 146,833(2.13배↑)

□ 공공부문 주요 기관들의 중소기업 R&D 지원에 대한 관심 증대

○ **(전용 R&D)** 국토부, 방사청 등은 中企 전용 R&D 사업을 마련·운용

* (국토부)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설 ('14, 119억원)
* (방사청)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확대 ('14, 95억원)

○ **(인센티브 제공)**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점부여, 지원분야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 인센티브 확대

* (산업부) 자유공모형 비중 확대('17년까지 50% 이상) 및 지원방식 다양화
* (방사청) 지원분야 확대(방산→일반군수품), 지원방식 다양화(정부주도→민관협력)

2 KOSBIR 제도의 운영 및 제도상 한계

가. 제도의 형식적 운영

□ **KOSBIR 제도의 시행기관 및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부실**

○ 시행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시행령에서 **19개 시행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실정**

○ 대상사업 판단을 시행기관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적 제출을 위해 **계획에 없던 사업을 임의로 포함시키는 사례** 발생

- 특히,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미한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

□ **형식적인 의무비율 산정 및 점검체계 미흡**

○ 의무비율을 **최근 3년간 실적의 상향추세에 따라 기계적으로 설정**하여 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의 형식적 운영을 유발

- 각 기관별 고유기능과 중소기업 전용 R&D가 운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, **의무비율의 계속적인 확대는 곤란**

○ 현재는 각 R&D 사업에 주관·공동(참여)·위탁기관으로 참여한 中企에 **실제 배분된 금액을 분리, 집계하여 지원 실적으로 인정** 중이나,

- **시행기관이 제시한 사업들에 대한 검증·확정절차**와 **의무비율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**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

나. 단편적 운영으로 협업 부족

□ **KOSBIR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화 등 후속조치에 무관심**

○ 제도 도입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4.7조원이 지원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**성과점검이나 사업화 연계지원은 전무**

○ '타당성 평가 → R&D → 사업화' 단계별로 지원하는 미국과 달리, 대상사업의 전후 **연계지원 없이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**

- 이로 인해, **중소기업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**

□ **참여기관의 협력과 관심의 부족**

○ KOSBIR 계획 및 실적이 시행 **초기에는 국무회의에 상정**되었으나, **이후 국과위 및 국과심에 보고***되어 기관들의 관심 저하

* (~'09) 국무회의 ('10~'12) 국가과학기술위원회, ('13~) 국가과학기술심의회

○ 제도 운영이 "의무비율 제시 ⇄ 실적 제출"에서 그치고 **상시 소통 채널이 부재**하여 시행기관의 애로 해결 및 제도 개선에 한계

다.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

□ **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·활용이 부족**

○ KOSBIR **대상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없이 시행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**하여 사업 간 동질성 및 연계성이 부족

○ 우수 시행기관에 대한 포상 등 **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**하여 참여의지가 저조

○ **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미흡**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유인 부족

□ **관리·운영기관의 역할 미흡**

○ 제도를 총괄하는 중기청이 **기관별 실적을 점검·확정하는 절차 없이 단순 취합**에 그치고 있어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

○ 적정 지원 비율 산정, 이행점검 등을 담당하는 **'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' 운영이 부진**

Ⅲ. KOSBIR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

기본 방향

◆ 내실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마련

◆ 부처 간 협업 강화로 범정부 차원의 中企 R&D 지원 실현

◆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

KOSBIR 제도의 내실화

1 시행기관 및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보완

- 시행기관 범위의 법제화
- KOSBIR 대상사업의 구체적 선정 기준 마련

2 의무비율 산정·점검체계 개선

-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의무비율 산정·제시
- 의무비율 달성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

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

3 단계별 연계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

- 사업화 자금 지원
- 국내·외 판로 개척
- 공공구매 제도 개선
- 추가 R&D 연계

4 보고체계 위상 강화 및 소통의 場 마련

- KOSBIR 실적의 국무회의 상정
- 부처 간 협의체 마련

관리·운영 체계 개편

5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

- KOSBIR 대상사업 통합관리체계 마련
- 성공사례 발굴·확산 등 제도적 성과의 공유 강화

6 제도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

- '중소기업 기술혁신추진단' 설치
-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 체계 확립

1 KOSBIR 제도의 내실화

가. 시행기관 및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보완

◆ **(현황)** KOSBIR 시행기관 기준과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미흡
◆ **(개선)** 시행기관 기준을 법제화하고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

□ **(시행기관) KOSBIR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제화**하여 책임성을 강화

○ 현재는 시행기관 선정기준 없이 **시행령에 기관명이 나열**되어 있으나, **선정기준*을 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」에 명시**

* 연간 연구개발예산 300억원 이상의 정부 및 공공기관 (다만, 기관별 특성 및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을 고려하여 추가 및 제외)

□ **(대상사업)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**하여 실제 중소기업 지원에 효과가 있는 사업만을 KOSBIR 대상사업으로 인정

○ **(범위)**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서 대상사업을 '출연·보조'에 한정하고 있으나, 계약 방식을 포함 가능토록 **'출연·보조 등'으로 개정**

* 일부 청 및 공공기관은 대부분 계약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 중

○ **(선정기준)** 시행지침에서 '中企 지원이 가능한 모든 R&D 사업'을 포함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, 시행령을 개정하여 **구체적 기준 마련**

< KOSBIR 대상사업 선정기준(안) >

◆ 시행기관의 연구개발예산사업에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
①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% 이상인 사업
② 중소기업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
③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R&D를 지원하는 사업

나. 의무비율 산정 · 점검체계 개선

◆ **(현황)**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승추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무비율을 산정하여 기관의 부담 가중
◆ **(개선)**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의무비율 설정, 점검·활용을 강화

□ **(의무비율 산정)** 시행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의무비율 산정기준 마련

○ **(기존)** 지난 3 ~ 4년간 실적의 상승추세를 반영한 **단일기준 적용**

○ **(개선)**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**'맞춤형 의무비율 산정 기준'** 마련

① KOSBIR 실적의 평균비율 이상으로 지원하는 기관 및 미만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나누어 **의무비율 산정방법 차별화**

② 지원 비율이 높은 기관은 의무비율의 확대보다는 운영의 내실화 및 부담 완화를 위해 **기관 실적의 3년 평균치**를 의무비율로 제시

③ 지원 비율이 낮은 기관은 中企에 대한 R&D 지원 확대를 위해 **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**하여 의무비율 제시(기존방식)

* 연평균 증가율이 (-)인 기관은 지난 3년 실적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제시하고, 지난 3년간 실적이 동일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기청장이 적정 의무비율 산정
* (중기청) 의무비율 제시 → (시행기관-중기청) 의무비율 협의

□ **(점검 강화)** 의무비율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·점검 강화

○ **(교차 점검)** NTIS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무비율 준수 여부 및 대상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교차점검을 강화

- 중장기 과제로서 참여형태(주관·공동·위탁), 지원방식(출연·보조·계약) 등 세부적 입력기준을 마련하여 NTIS에 반영 추진(미래부 협조)

○ **(실적 활용)** 미래부 R&D 예산 검토·심의시 中企 R&D 지원 사항을 고려하여 기관들의 실적 달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(미래부 협조)

<참고3> 2015년 KOSBIR 의무지원비율(안)

◆ KOSBIR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 비율 : '14년 기준 11.8%

◆ 지원 비율이 높은 기관(문화부, 산업부, 환경부, 국토부, 농림부)에 대해서는 3년간 실적*의 평균치를 의무비율로 제시

* '14년 실적은 의무비율로 대체

◆ 지원 비율이 낮은 기관(복지부, 방사청, 기상청, 해양부, 농진청, 미래부, 산림청, 문화재청 및 공공기관)은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제시

구분			'12년 실적	'13년 실적	'14년 의무비율	3년 실적 평균	연평균 증가율(%)	'15년 의무비율
평 균								12.9
②	정부기관	문화체육관광부	36.7	36.2	33.1	35.3	-	35.3
		산업통상자원부	28.2	36.9	33.0	32.7	-	32.7
		환경부	20.5	18.2	19.3	19.3	-	19.3
		국토교통부	13.6	23	20.4	19.0	-	19.0
		농림축산식품부	12.3	20.8	13.9	15.8	-	15.8
③	정부기관	보건복지부	6	6.5	5.6	-	-3.4	6.5
		방위사업청	5.4	5.3	5	-	-3.8	5.4
		기상청	3.5	2.2	3.5	-	0.0	3.5
		해양수산부	-	2.4	2.7	-	13.0	3.0
		농촌진흥청	2.7	2.8	2.6	-	-1.9	2.8
		미래창조과학부	-	2.9	1.4	-	52.0	2.9
		산림청	0.4	0.5	1.0	-	58.1	1.6
		문화재청	0.6	0.1	0.5	-	-8.7	0.6
	공공기관	한국가스공사	4.5	4.4	5.2	-	7.5	5.6
		한국도로공사	3.2	3.1	3.2	-	0.0	3.2
		한국철도공사	1.0	1.8	4.0	-	100	8.0
		한국전력공사	1.2	1.4	1.1	-	-4.3	1.4
		한국수자원공사	0.3	1.0	0.8	-	63.3	1.3
		한국토지주택공사	0.2	0.2	0.2	-	0.0	0.3

* 이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의무비율을 확정

2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

가. 단계별 연계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

◆ **(현황)** 中企 R&D 지원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질적 성과에 대한 관심 부족

◆ **(개선)** 미국과 같이 기술개발 단계별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제도

□ **(사업화 지원)** KOSBIR 시행기관의 지원범위를 기존 기술개발 단계 위주에서 사업화 지원 단계까지 확대

단계		주요내용
1단계	기획·타당성 평가	▪ 각 기관에서 R&D 사업 기획부터 타당성 평가, R&D까지 수행, KOSBIR 대상사업 운영
2단계	기술개발	
3단계	사업화	▪ 상용화 단계 R&D에 대해 중기청 후속사업(자금, 판로·수출, 추가 R&D 등)을 연계 ▪ KOSBIR 사업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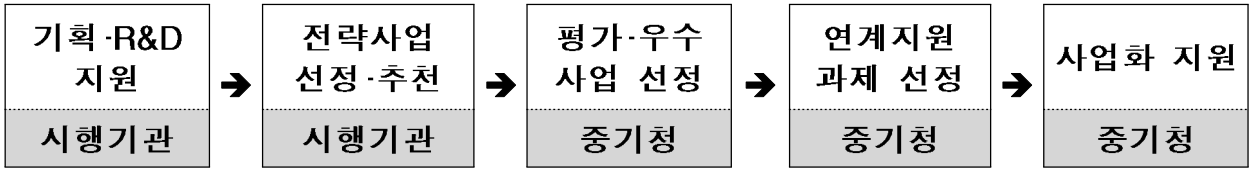
□ **(연계방안)** '中企 지원 전략사업' 추천(시행기관) → 사업 연계(중기청)

○ (전략사업 기준) 각 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대상사업 중 中企 지원 비중이 크고, 사업화 연계지원에 적합한 사업

① 상용화 단계의 R&D

② 中企 전용 사업 또는 中企 지원 비중이 50% 이상인 사업

○ (절차) 추천된 전략사업에 대해 약식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, 중기청 후속사업 연계지원으로 사업화 성과를 제고



□ **(금융지원)**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생산설비 증설, 원부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·운전자금을 연계

○ (개발기술사업화자금) 시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략 과제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정책자금 연계 지원 ('15.상)

* KOSBIR 성공과제에 대해 창조형 기술유망기업으로 인정 : ('15) 1,500억원

○ (민간금융지원프로그램) 기보, 시중은행 등과 협약을 통해 KOSBIR 성공과제의 사업화 자금에 대한 우대 지원 프로그램 마련 ('14.하)

* 기보 : 보증비율 우대(85→90%), 보증료 감면(0.3%p)
* 시중은행 : 대출금리 인하, 대출기간 연장, 수수료면제 등

- 시행기관이 추천한 전략과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KOSBIR 시행기관 및 기술보증기금, 시중은행 간 협약 체결 ('14.하)

□ **(판로지원)** 중기청의 판로·수출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기관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과정에 대한 부족한 지원을 보완

○ (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) 마케팅 전략수립, 온·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홍보, 공동 A/S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('15)

우수과제 추천	⇨	마케팅 전략수립	⇨	테스트 판매	⇨	종합적 판로지원
KOSBIR 시행기관		MD · 마케터/ 전문가		전용 판매장 입점		전시회, 구매상담회, 제품홍보, A/S 등

○ (맞춤형 수출지원)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'글로벌 역량진단 → 맞춤형 지원' 등 단계별 역량강화 지원 ('15)

단계	수출 초보기업 (내수 및 100만$ 미만)	수출 유망기업 (100만$ ~ 500만$)	글로벌 강소기업 (500만$ ~ 5,000만$)
지원 내용	무역교육, 포장디자인, 해외홍보 등	심층 시장조사, 제품 디자인 등	글로벌 브랜드 개발, 전략컨설팅 등

□ **(공공구매)** KOSBIR 제도를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조성 및 적기 시장진입(Time to market)을 위해 공공구매 제도 개선

○ (사전예고제) 정부, 공공기관 등이 미리 KOSBIR를 통해 개발할 수요기술을 공지하여,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 ('15)

* 국방, 기상, 에너지, 철도 등 주요 분야에서 향후 1~2년 후 KOSBIR를 통해 지원할 주요 기술을 사전에 공지

○ (공공구매 개선) KOSBIR 시행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가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

□ **(추가 R&D 지원)** KOSBIR 대상사업 중 개발·응용단계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추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

○ (상용화 R&D 연계) KOSBIR 시행기관이 추천한 우수 과제에 대해 중기청의 R&D 사업을 통해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('15)

* 기업, 기술의 성격에 따라 개별기업에 적합한 사업과 연계

(사례) 미국의 3단계 SBIR 지원방식

□ **'타당성 검토 → 기술개발 → 사업화'의 단계별 지원체계 정착**

구분	지원내용	지원한도	지원기간	기업부담
1단계	기술개발타당성 조사	최대 15만$	6개월	개발비의 2/3이상
2단계	R&D 수행	최대 100만$	1~2년	개발비의 1/2이상
3단계	상업화	민간자금	-	-

나. 보고체계 강화 및 소통의 場 마련

◆ **(현황)** 보고체계 위상 약화 및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시행기관들의 제도 운영에 대한 관심이 저조
◆ **(개선)** 국무회의 보고 및 부처 간 협의체 마련으로 기관들의 참여 독려

□ **(보고체계)** KOSBIR 실적 및 계획을 국과심을 거쳐 **국무회의에 보고**(국과심→국무회의)함으로써 시행기관의 관심 및 제도 실효성 제고

○ 매년 전년도 지원실적과 당해 연도 지원 의무비율, 주요 제도개선 내용 등을 **국무회의에 보고**

- **(추진 방법)** 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」 제13조 개정('14.하)

* 개정안 마련(8월) → 부처협의 → 국무회의 의결 → 정기국회 상정

□ **(부처 간 협력체계)** 시행기관이 KOSIBR 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**상시소통채널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**

○ **(구성)**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, 시행기관의 국장·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**부처 간 협의체 구성**

○ **(기능)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**하여 KOSBIR 제도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통로로 활용

- 상반기는 전년도 실적을 점검하고, 하반기에는 의무비율 산정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협의

(사례) 일본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 연락회

- **(설치 목적)**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각 성·청간의 연락·협의 기구
- **(기능)** 직접적인 지원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며, '교부 방침'의 작성 협의, 정보 교환, 개선사항 논의 등의 기능을 수행
- **(구성 및 운영)** 각 성·청의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매년 2~3회 개최

3 관리 · 운영체계 개편

가.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

◆ **(현황)** 대상사업이 기관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성과 공유가 미흡
◆ **(개선)**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

□ **(통합관리)** 중소기업의 KOSBIR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상사업을 **통합관리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**

○ 각 부처에서 사업 공고 시 KOSBIR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**KOSBIR 대상사업임을 표시하여 공고**

- 중기청에서는 대상사업의 목록 및 개별 사업의 내용 등을 취합하여 **KOSBIR 온라인 사이트에서 통합 공고를 실시**

○ 중기청 - KOSBIR 시행기관이 함께 **온·오프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** (매년 2, 6월에 개최)

○ KOSBIR 제도의 취지, 시행기관 현황, 그간 실적 및 관련 행사 일정 등 **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**

(사례) 일본 SBIR 특설사이트 및 통합공고

- **(SBIR 특설사이트)** 대상사업 목록, 개별 사업의 내용, 그간 SBIR 지원 내역 및 지원기업 정보, 세미나 개최 일정 등 정보를 제공
- **(통합 공고)** 사업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는 '정부 공동연구개발관리시스템(e-Red)'에서 공고 시 SBIR 해당 여부를 표시하고, SBIR 특설사이트에서도 대상사업 공고 정보를 제공

□ **(제도적 성과의 공유)** 제도 활용을 통한 **성공사례를 발굴·소개**

○ **(추진 내용)**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, 최우수 사례는 **시행기관 담당자와 중소기업에 포상을 수여**

○ **(추진 방법)** '15년부터 수시로 접수하여 **매년 우수사례집을 발간**하고 **차년도 기술혁신대전에서 포상 및 부스 지원**

나.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

◆ **(현황)** 제도 관리기관인 중기청 內에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KOSBIR 실적에 대한 이행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

◆ **(개선)** 전담기구인 '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' 설치 및 이행점검체계 확립

□ **(기술혁신지원단)**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**전담기구를 중기청 內에 설치***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

* 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」 제13조의2에 근거

○ **(구성)** 시행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아 단장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구성하며, **상시 조직화 추진** ('14.하)

○ **(기능)** 기관별로 수립하는 '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' 검토, 제도 운영 실태 및 실적 점검,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·평가 등

□ **(이행점검체계 확립)** 기술혁신지원단을 통해 **기관별 지원 계획과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** 및 **개선권고 실시**

○ **(실태조사)** 시행기관의 지원 계획 및 실적,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(매년 2~4월)

○ **(개선권고)**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해당 시행기관에 개선권고(매년 4월)

* 제도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은 1개월 내에 개선결과를 중기청장에 통보

○ **(지원계획 수립)** 시행기관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차년도 지원계획을 마련, 중기청은 종합하여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(매년 12월)

Ⅳ. 추진일정

추진 과제	추진계획
1. KOSBIR 제도의 내실화	
가. 시행기관 및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보완	· 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14.하) · 「KOSBIR 시행지침」 개정('14.하)
나. 의무비율 산정·점검체계 개선	· 「KOSBIR 시행지침」 개정('14.하) · NTIS 시스템 세부 입력기준 마련('15)
2.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	
가. 부처 간 연계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	· KOSBIR 사업에 대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('15) · KOSBIR 성공과제의 사업화 자금에 대한 우대지원프로그램 마련('14.하) ·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마련 및 맞춤형 수출 지원('15) · 사전예고제 도입 및 「국가계약법」('15) · KOSBIR - 중기청 R&D 사업 연계('15)
나. 보고체계 위상 강화 및 소통의 場 마련	· KOSBIR 실적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」 개정('14.하) · 부처 간 협의체 구성('14.하)
3. 관리 · 운영체계 개편	
가.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	· KOSBIR 온라인 사이트 구축('14) · 통합공고 및 설명회 실시('15~)
나. 제도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	· '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' 설치('14.하)

〈 붙임 〉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현황

□ 미국

○ **(개요)** 연간 대외연구개발예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기관(11개) 예산의 일정비율(2.5%)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제도화

* 美 연방의회는 '08년 이후 한시적으로 매년 제도를 연장해오다가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인정하고 최근 '17년까지 연장

○ **(지원방식)** 中企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누어 지원하고, 단계별 실적을 점검하여 적격자에게만 지원을 계속

< 미국 SBIR의 3단계 지원체계 >

구분	지원내용	지원한도	지원기간	기업부담
1단계	기술개발타당성 조사	최대 15만$	6개월	개발비의 2/3이상
2단계	R&D 수행	최대 100만$	1~2년	개발비의 1/2이상
3단계	상업화	민간자금	-	-

- 또한, 각 기관에서 필요한 기술·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정부구매가 가능토록 하여 정부조달시장을 초기시장으로 활용

○ **(SBA 역할)** 기관별 실적 집계 후 의회 보고를 통해 참여기관을 통제하고, SBIR 지침 수립 및 조사·검토 등의 역할 수행

□ 일본

○ **(개요)** 기술개발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7개 정부기관의 특정보조금 등의 일정금액을 중소기업에 지원

○ **(지원방식)** 미국과 마찬가지로 '타당성 연구조사 → 기술개발 → 사업화' 단계별 지원방식을 도입

- 특히, 별도의 사업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정부계 금융기관들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, 각종 금융상 특례 등을 제공

○ **(중기청 역할)** 중기청은 기관 간 협의 및 연락 기능을 수행하며, 참여기관 통제는 각의에서 담당